

숙박 약관

TERMS AND CONDITIONS FOR ACCOMMODATION CONTRACTS



숙박 약관

TERMS AND CONDITIONS FOR ACCOMMODATION CONTRACTS

적용 범위

- 제 1 조 본 호텔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숙박 약관(이하 ‘본 약관’이라 합니다)의 규정에 따르며,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.
- 2 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을 우선합니다.

숙박 계약의 신청

- 제 2 조 본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(1) 투숙객 성명
 - (2)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 - (3) 숙박 요금(원칙적으로 별표 제 1 의 기본 숙박료를 따른다.)
 - (4)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2 투숙객이 투숙 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, 본 호텔은 해당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.

숙박 계약의 성립 등

숙박 계약의 성립 등

- 제 3 조 투숙객은 본 약관 및 각 이용 규정에 동의한 후 투숙합니다.
- 2 투숙객이 미성년자이며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 동의서를 제출하고 투숙합니다.
- 3 숙박 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 성립합니다. 단, 본 호텔이 해당 신청을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4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, 숙박 기간(3 일을 초과할 경우 3 일간)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본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본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.
- 5 신청금은 먼저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, 제 6 조 및 제 19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으로 충당하고, 잔액이 있을 경우 제 13 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지불할 시에 반환합니다.
- 6 제 4 항의 신청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,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. 단, 신청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본 호텔이 그 사실을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
신청금의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

- 제 4 조 전 조 제 4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같은 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.
-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따라 본 호텔이 전 조 제 4 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숙박 계약의 체결 거부

제 5 조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있어 숙박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- (1)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.
- (2) 객실이 만실(정원 초과)로 인해 여유가 없는 경우.
- (3)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여관업법(1948 년 법률 제 138 호. 이후의 개정을 포함한다.) 제 2 조 제 6 항에 규정된 특정감염증(이하 ‘특정감염증’ 이라 한다.)의 환자 등(여관업법 제 4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 규정된 자. 이하 동일)인 경우.
- (4) 천재지변, 시설 고장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.
- (5)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(6)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고객에 의한 괴롭힘 행위(별표 제 2)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(7)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도박 및 그 밖의 불법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(8)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소란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위협이나 불안 등을 느끼게 하는 등 숙박 또는 이용 중인 다른 고객에게 현저한 불편을 끼치는 언행을 한 경우.
- (9)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다음 가부터 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.
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(1991 년 법률 제 77 호)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된 폭력단(이하 ‘폭력단’ 이라 한다.), 같은 조 제 2 조 제 6 호에 규정된 폭력단원(이하 ‘폭력단원’ 이라 한다.),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
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인 경우
다 법인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
- (10)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만취 상태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 (후쿠오카시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 10 조)
- (11)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본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.

투숙객의 계약해지권

제 6 조 투숙객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- 2 본 호텔은 투숙객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(제 3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해당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, 해당 지불 이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)에는 별표 제 3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. 단, 본 호텔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따라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- 3 본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8 시(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으로부터 2 시간이 경과한 시각)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은 경우, 해당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본 호텔의 계약해지권

제 7 조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있어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본 호텔은 본 조항에 따른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- (1) 투숙객이 특정감염증 환자 등인 경우.
 - (2) 천재지변, 시설 고장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.
 - (3) 투숙객이 숙박 시 법령 규정,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 - (4) 투숙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고객에 의한 괴롭힘 행위(별표 제 2)를 할 우려가 있다고
-

인정되는 경우.

- (5) 투숙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도박 및 그 밖의 불법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(6) 투숙객이 소란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위협이나 불안 등을 느끼게 하는 등 숙박 또는 이용 중인 다른 고객에게 현저한 불편을 끼치는 언행을 한 경우.
- (7) 투숙객이 다음 가부터 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.
가 폭력단, 폭력단원,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
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인 경우
다 법인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
- (8) 투숙객이 만취한 상태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(후쿠오카시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 10 조)
- (9) 미성년자 투숙객이 친권자 및 기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거나 성년인 것처럼 나이를 속인 사실이 밝혀진 경우
- (10) 투숙객이 본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.

2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,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.

숙박 등록

제 8 조 투숙객은 숙박일 당일에 본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.

- (1) 투숙객의 성명, 주소 및 연락처
- (2) 투숙객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, 그 국적 및 여권번호
- (3)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
- (4)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 투숙객이 제 13 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, 전자화폐 등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 1 항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하여 본 호텔에서 지불에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.

숙박 정원

제 9 조 객실의 숙박 정원은 최대 5명입니다. 어린이의 동반 취침은 침대 1개당 1명까지 가능하며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반 취침 대상입니다.

객실 이용 시간

제 10 조 투숙객이 본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입니다. 단, 연속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이용이 가능합니다.

-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다음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.
- (1) 초과 시간이 3시간까지인 경우에는 객실 요금의 30%
 - (2) 초과 시간이 6시간까지인 경우에는 객실 요금의 50%
 - (3) 초과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객실 요금의 전액

이용 규칙의 준수

제 11 조 투숙객은 본 호텔 내에서 본 호텔이 정하고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영업시간

제 12 조 본 호텔 프런트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, 그 외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홈페이지와 각 장소의 게시물, 객실 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.

프런트·정산 등 서비스 운영 시간

가 출입 제한 시간 없음

나 프런트 24 시간

다 정산 24 시간

식음료 등(시설) 서비스 시간

가. 조식 6:30~10:00(Camellia)

나. 점심식사 11:30~14:00(Camellia)

11:30~14:30(Yamazato/Toh-Ka-Lin/KOHGYOKU)

다. 저녁식사 평일 17:30~21:00/토, 일, 공휴일 17:00~21:00(Yamazato/Sazanka/Toh-Ka-Lin)

토, 일, 공휴일 17:00~20:30(Camellia)

17:00~21:30(KOHGYOKU)

17:00~22:00(Okura Brewery)

라. 기타 식음료 등 6:30~22:00(룸서비스) ※매장에 따라 휴무일이 있음

14:00~23:00(Hakatagawa)

※영업 종료 시간 30 분 전에 주문을 마감합니다.

부대시설 이용 시간

가. 헬스클럽 8:00~20:00(정기 휴무일: 매월 말일, 12 월 제외/6 월 27 일~30 일)

-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요금 지불

제 13 조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 1 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.

-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화폐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하는 여행자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, 전자화폐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, 투숙객의 출발 시 또는 본 호텔이 청구한 시점에 프런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3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,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.

본 호텔의 책임

제 14 조 본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그 손해가 본 호텔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- 2 본 호텔은 만일의 화재나 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
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취급

제 15 조 본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숙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.

-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,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며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. 단,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본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위탁물 등의 취급

제 16 조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분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본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투숙객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, 본 호텔은 15 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- 2 투숙객이 본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분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투숙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본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 만 엔을 한도로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

제 17 조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, 그 도착 전에 본 호텔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인도합니다.

- 2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,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이 본 호텔에 남겨진 경우, 해당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지시를 요청합니다. 단,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 일간 보관한 후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.

- 3 앞의 두 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관한 본 호텔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에는 전 조 제 1 항의 규정에, 전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합니다.

주차에 대한 책임

제 18 조 투숙객이 본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, 차량 열쇠의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본 호텔은 주차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단, 주차장 관리에 있어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.

투숙객의 책임

제 19 조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, 해당 투숙객은 본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
숙박 약관·이용 규칙의 변경

제 20 조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호텔의 재량에 따라 본 약관 및 이용 규칙(이하 ‘약관 등’이라 합니다.)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.

- (1) 약관 등의 변경이 투숙객의 일반적인 이익에 부합한 경우.
-

- (2) (2) 약관 등의 변경이 계약한 목적에 반하지 않고 변경의 필요성,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, 변경 내용 및 기타 변경 관련 사정에 비추어 보아 합리적인 경우.
- 2 본 호텔은 전항에 따른 약관 등의 변경 시 변경 후 약관 등의 효력 발생일 1 개월 전까지 약관 등을 변경한다는 사실 및 변경 후의 내용과 그 효력 발생일을 본 호텔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.
- 3 변경된 약관 등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투숙객이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투숙객은 약관 등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면책 사항

제 21 조 본 호텔 내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 시 고객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니다.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 중 시스템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른 결과,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본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본 호텔 및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귀하는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
언어 및 준거법

- 제 22 조 본 약관은 일본어 및 영어로 작성되나, 두 언어본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본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2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본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 법원에서 일본 법령에 따라 해결되는 것으로 합니다.

별표 제 1 숙박 요금의 내역(제 2 조 제 1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관련)

		내역
	숙박 요금	① 기본 숙박료(객실료) ② 서비스료(① × 15%)
	추가 요금	③ 식음료비 또는 추가 식음료비 ④ 서비스료(③ × 15%) ⑤ 기타 이용 요금
	세금	소비세 숙박세

비고 1. ⑤ 기타 이용 요금: 전화 요금, 세탁 요금, 추가 침대 요금 등

별표 제 2 고객에 의한 괴롭힘 행위(제 5 조 제 6 항 및 제 7 조 제 4 항 관련)

숙박료 감액 및 그 내용을 실현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요구(숙박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

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.) 또는 무례하거나 난폭한 언동 및 그 밖의 종업원의 심신에 부담을 주는 언동(영업자가 숙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1 항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한 것에 기인한 경우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.)을 동반한 요구로서 해당 요구를 한 자에 대한 응대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노력을 요하게 되는 행위(아래에 예를 제시합니다.)를 반복한 경우, 해당 행위를 고객에 의한 괴롭힘 행위로 간주합니다.

- 신체적 공격(폭행, 상해 등), 정신적 공격(협박, 폭언, 비방 등)에 해당하는 행위
- 무릎을 꿇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
-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, 감금 등 일정 시간을 초과하는 구속적 행위(장시간 전화를 포함합니다.)
- 큰 소리, 폭언 등으로 직원을 비난하는 행위
- 트집을 잡아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대금 환불을 요구하거나, 상품 교환 및 금전적 보상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(다른 투숙객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숙박료에 대한 부당한 할인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.)
-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방법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등의 책임 추궁 행위
- 운영 규칙 및 제도상 대응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과도한 요구나 불만 제기 행위
- SNS 나 언론에 폭로(직원의 성명 공개 등)를 암시하는 협박 행위
- 특정 직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

별표 제 3 위약금(제 6 조 제 2 항 관련)

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		미투숙	당일	전날	9 일 전	20 일 전
계약 신청 인원						
일반	14 명까지	100%	80%	20%	-	-
단체	15~99 명까 지	100%	100%	20%	10%	-
	100 명 이상	100%	100%	80%	20%	10%

- 비고 1. %는 기본 숙박료(객실료)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.
2.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, 단축된 일수와 관계없이 1 일분(첫날)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.
3. 단체 투숙객(15 명 이상) 중 일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, 숙박일 10 일 전(그 이후에 예약 신청을 수락한 경우에는 수락한 날)의 숙박 인원의 10%(끝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)에 해당하는 인원 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
4. 단, 별도로 개별적인 위약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 내용을 우선합니다.

2024 년 4 월 1 일 최종 개정

